

2.2.1 초당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정 2012.03.01.(규칙 제 3 호)
개정 2013.02.13.(규칙 제349호)
개정 2013.12.27.(규칙 제384호)
개정 2014.12.09.(규칙 제409호)
개정 2015.12.21.(규칙 제426호)
개정 2017.02.14.(규칙 제507호)
개정 2017.12.27.(규칙 제55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본 대학교의 대학원에 대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원의 종류)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제3조 (대학원장)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4조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그리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연계하는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대학원에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과정 및 박사후과정) 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 연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취득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사 후 과정으로 선발하여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및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경력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 및 박사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학과 및 정원)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대학원의 학과 내 전공 설치에 대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전공) 외에 2이상의 학과(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위탁학생, 계약학과의 학생
2.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4. 학과 간 협동과정 학생(산업대학원에 한한다)
5. 학·연·산 등 협동과정 학생
6.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교육과정 학생
7. 결혼 이주자로 외국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

제2장 입학

제7조 (입학 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하고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8조 (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대학원과정의 지원은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일정한 석사과정의 출신 학과(전공)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선발절차를 거쳐 전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면접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전형)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학군제후에 의한 군위탁생 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별도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는 정원 내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 2 (계약에 의한 학과 등) ① 본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은 입학에 제한한다.

제14조 (편입학 및 재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5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으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하고,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16조 (교과과정) 대학원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조 (학점취득 및 수료학점) ① 석사학위 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총 학점수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총 학점 수는 36학점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이 이수해야 할 총 학점수는 5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매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18조 (수업) 대학원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현장실습

수업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수업일수 및 수료시기) ①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③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20조 (성적 및 수료)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 등 급 | 점 수 | 평 점 |
|----------------|----------|-----|----------------|---------|-----|
| A ⁺ | 95 ~ 100 | 4.5 | C ⁺ | 75 ~ 79 | 2.5 |
| A ⁰ | 90 ~ 94 | 4.0 | C ⁰ | 70 ~ 74 | 2.0 |
| B ⁺ | 85 ~ 89 | 3.5 | F | 69 이하 | 0 |
| B ⁰ | 80 ~ 84 | 3.0 | | | |

② 학점인정은 강의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100점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7조 1항에 규정된 학점을 이수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일 경우에 각각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제21조 (학위수여 및 명예학위)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 및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외국어시험 및 학위종합시험과 학위논문 등 학위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④ 특수대학원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별지 서식 2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단,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학술과 문화에 공헌하거나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를 한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 (등록) ① 대학원생은 매 학기 초 소정의 기일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23조 (휴학 및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3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의 군복무 기간과 장기 해외근무자 및 대학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제5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25조 (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연구생) ① 대학원에 개설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원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은 대학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 ③ 연구생으로서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별지 서식3)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1년(2학기)으로 한다.
- ⑤ 연구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6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제27조 (학생의 의무) 대학원생은 학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28조 (장학금, 연구비) 대학원생으로 품행이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상벌) ① 재학 중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0조(직제)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교학과장과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각 학과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단, 주임교수 및 교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③ 각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의 학사를 통괄하며, 각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명을 받아 그 전공분야의 수업, 연구지도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31조 (대학원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교무처장 및 기획연구처장 및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진학, 학위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포상, 장학, 징계에 관한 사항
5. 학위수여 및 학위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6. 대학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제 규칙, 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기) 대학원장 및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34조 (준용)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36조 (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7일 이상 공고 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제3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2011학년도 이전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자는 종전 산업대학원 학칙이 적용된다. 단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부 칙(제34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4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9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6호)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7호)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학생정원 <개정 2015.12.21., 2017.02.14., 2017.12.00>

| 구분 | 학위종별 | 학위 | 설치학과 | 전공 | 정원 |
|-------|--------------|--------------|----------|--------------------------------|-------|
| 대학원 | 석사 (학술학위) | 사회복지학 석사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19 |
| | | 상담심리학 석사 | | 상담심리학 | |
| | | 간호학 석사 | 간호학과 | 간호학 | |
| | | 이학 석사 | 조리과학과 | 조리학 | |
| | | 보건학 석사 | 안경광학과 | 안경광학 | |
| | | 체육학 석사 | 사회체육학과 | 체육학 국제스포츠경영학 | |
| | 박사 (학술학위) | 사회복지학 박사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9 |
| | | 체육학 박사 | 사회체육학과 | 체육학 국제스포츠경영학 | |
| | | 경영학 박사 | 국제문화경영학과 | 국제문화경영학 | |
| | 특수 대학원 | 석사 (전문학위) | 사회복지학 석사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 경영학석사 | | | 경영학과 | 경영학 | |
| 문화석사 | | | 국제문화학과 | 문화관광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문화산업교육 | |
| 공학석사 | | | 항공산업학과 | 항공산업학 | |
| 장애학석사 | | | 장애학과 | 장애학 | |

(별표 2) 계약학과 학위명, 설치학과, 학생정원 <개정 2015.12.21., 2017.02.14., 2017.12.00>

2016학년도

| 구분 | 학위종별 | 학위 | 설치학과 | 전공 | 정원 | 설치기간 |
|--------|--------------|----------|---------------------|-------|----|----------------------------|
| 특수 대학원 | 석사 (전문학위) | 상담심리학 석사 |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계약학과) | 상담심리학 | 80 | 2016. 3. 1~ 2018. 2. 28 |

2017학년도

| 구분 | 학위종별 | 학위 | 설치학과 | 전공 | 정원 | 설치기간 |
|--------|--------------|----------|---------------------|-------|-----|----------------------------|
| 특수 대학원 | 석사 (전문학위) | 상담심리학 석사 |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계약학과) | 상담심리학 | 100 | 2017. 3. 1~ 2019. 2. 28 |

2018학년도

| 구분 | 학위종별 | 학위 | 설치학과 | 전공 | 정원 | 설치기간 |
|-----------|--------------|----------|---------------------|-------|-----|----------------------------|
| 특수 대학원 | 석사 (전문학위) | 상담심리학 석사 | 아동청소년상담학과 (계약학과) | 상담심리학 | 100 | 2018. 3. 1~ 2020. 2. 29 |

(별지 서식1)

제 00-공용 호

수료증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에서 년 월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2010년 2월 16일



초당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홍길동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길동

(별지 서식2)

제 00-공용 호

학 위 기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과(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홍 길 동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 길 동

학위번호: 초당000000(석(박)000000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초당대학교 2010 학 1234

* 논문 없는 경우 학위기 별도 작성

학 위 기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과(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대학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공학박사

홍길동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길동

학위번호:초당000000(석(박)00000000호)

(별지 서식2)

(별지 서식2)

학 위 기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00석사(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

2000년 0월00일

초당대학교 산업 대학원장 공학박사

홍 길 동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 석사(전문분야) 학위를 수여함.



2000년 0월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 길 동

학위번호:초당00(석)0000

(별지 서식3)

제 00-공용 호

연구실적증명서

김 초 당 Chodang, Kim

0000년 00월 00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OO 연구과정에서 O년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대학원장 공학박사

홍길동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00년 0월 00일



초당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홍길동

草堂大学研究生院管理规定

2012.03.01. 制定（规定之第3号）
2013.02.13. 更改（规定之第349号）
2013.12.27. 更改（规定之第384号）
2014.12.09. 更改（规定之第409号）
2015.12.09. 更改（规定之第426号）
2017.02.14. 更改（规定之第507号）

第一章 总则

第一条（目的） 本规定根据草堂大学(以下称为“本校”) 校规第2条而制定，旨在强化对本院的行政运作及教育课程等有关事项的管理。

第二条（研究生院的类别）本校研究生院设置如下：

- ① 一般研究生院：研究生院
- ② 特殊研究生院：产业研究生院

第三条（研究生院院长）① 一般研究生院与特殊研究生院设有院长，院长由副教授以上的教师担任。

② 各研究生院的院长由校长任命，管理研究生院的教务，监督所属教职员，并指导学生。

第四条（课程）① 一般研究生院设有硕士学位课程，博士学位课程以及硕博连读课程。

② 特殊研究生院设有硕士学位课程。

③ 根据研究生院终生教育及《高等教育法》第26条之规定，可以开设、运营公开讲座以便于学习特定领域的专门知识、技术。

第五条（研究课程和博士后课程）① 大学本科毕业以上学历者，如申请一般研究生院或特殊研究生院，可允许其入学学习相关课程。

② 取得博士学位者，可同过规定的程序，学习博士后课程并从事相关研究。

③ 对于进修研究课程及博士后课程者，可颁发研究经历证明书。

④ 有关研究课程及博士后课程的细节将另行决定。

第六条（系别和名额）① 一般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开设的系科（专业）和入学名额如附表1所示，研究生院系科中专业的设置由研究生院委员会审议决定。

② 研究生院设置的学位课程，可分为除本系科（专业）外其他两个以上系科（专业）也可共同开设的公共课程和根据与研究机构或企业签订的合作协议而开设产学研课程、学研课程和产学课程。具体事宜将会根据需要另行决定。

③ 符合下列其中任何一项要求者，可不受本条①之规定入学，但不属于规定名额内招生。

1. 委培生、合约生

2. 外国留学生(只限于父母均为外国人者) 或者在国外接受16年以上学校教育课程者

3. 海外公民、曾在外国留学的韩国学生

4. 系科间开设公共课程的学生(只限于产业研究生院)

5. 开设产、学、研等公共课程的学生

6. 其它由教育科学技术部部长指定的特殊教育课程的学生

7. 在国外取得学士学位以上及同等学历后因结婚移民到韩国的人士

第二章 入学

第七条（入学时间）研究生院的入学时间为每学期开学后的三十天内，每年招生一至两次。

第八条（入学资格）① 申请研究生院的硕士学位课程或硕博学位连读课程者需具有学士学位或法律上认可的同等学历。

② 申请研究生院的博士学位课程者需具有硕士学位或法律上认可的同等学历。

③ 申请研究生院课程，除部分博士课程外，均不受以前学士及硕士课程所修专业影响。

第九条（申请步骤）申请读研者，需提交所需的材料和入学申请费用。

第十条（招生）① 将根据以下步骤对申请读研者进行选拔。特殊情况时，也可根据研究生院委员会的意见进行修改。

1. 材料审核
2. 面试

② 有关招生的具体细则将会经研究生院委员会审议后由校长决定。

第十一条（特招）① 具有研究生院入学资格的外国人、海外公民、曾在外国留学的韩国学生，学校和军队共同培养的军队委培生以及教育部部长推荐者可经过特别招生作为特殊名额允许入学。

② 与本校有产学合作的企业上班的人员，在经由所属部门负责人推荐后，可在规定名额内对其进行特别招生。

第十一条之二（根据协议运行的系科等）① 本研究生院可与国家、地方自治团体以及企业等开展合作办学，双方签约后可设立系科专业，有关与此的具体细节由校长决定。

第十二条（取消入学）录取者被发现为无资格入学或未及时注册时，将被取消入学资格。

第十三条（限制入学）本校在职中的专职教师无入学资格。

第十四条（插班就读与重新入学）① 招生名额未满时可允许插班入读。

② 除招生名额未满时，一概不允许重新入学。

第三章 学习年限、进修课程、学分、成绩及结业

第十五条（学习年限及在学年限）① 研究生院的学习年限为：硕士学位课程两年，博士学位课程两年以上；硕博连读课程为四年，其中包括硕士学位课程中已经研读的上课时间。

② 研究生院的在学年限：硕士学位课程为五年，博士学位课程和硕博学位连读课程为十年，插班就读及重新入学者计算时包括此前学习的时间，但休学期间不包含其中。此项不

针对特殊研究生院的学生。

第十六条（课程） 研究生需要研修的科目经过研究生院委员会审议后由研究生院院长决定。

第十七条（获取学分及结业学分） ① 学生就读硕士学位课程时，应研修的总学分为24分以上；就读博士课程时，需研修的总学分为36学分以上；就读硕博连续课程时，需研修的总学分为57学分以上。

② 每学期可最多申请9学分。

第十八条（上课） 研究生课程分为白天课程、晚上课程和网络视频课程以及现场实习课程等。

第十九条（上课时间及结业时间） ① 每学期上课时间为15周以上。

② 每学期末为硕士及博士学位课程的结业认证时间。

③ 硕士、博士课程结束后，结业证的颁发请参照附表。

第二十条（成绩和结业） ① 学业成绩的等级和评分如下。

| 等级 | 分数 | 评分 | 等级 | 分数 | 评分 |
|----------------|----------|-----|----------------|---------|-----|
| A ⁺ | 95 ~ 100 | 4.5 | C ⁺ | 75 ~ 79 | 2.5 |
| A ⁰ | 90 ~ 94 | 4.0 | C ⁰ | 70 ~ 74 | 2.0 |
| B ⁺ | 85 ~ 89 | 3.5 | F | 69 以下 | 0 |
| B ⁰ | 80 ~ 84 | 3.0 | | | |

② 出勤率达2/3以上、考试成绩达70分（总分100分）以上者方可给予学分认证。

③ 修完第十七条第一项规定的学分，全部科目的成绩平均分达到3.0以上时，才可视为修完各项学位课程。

第二十一条(学位颁发及名誉学位) ① 取得规定的学分，通过外语考试及学位综合考试者，提交学位论文并通过研究生院委员会的审核后将被授予相应的学位，具体学位如表2所示。

② 根据第一项的规定，所授予的学位具体类别如表2所示。

③ 外语考试、学位综合考试及学位论文等与学位颁发相关的具体事项由研究生院委员会审议后决定。

④ 特殊研究生院不受第1项规定之限定，学生在取得规定的学分，提交的学位论文通过审查后将按照表2被授予学位。不提交学位论文者可通过多修6学分替代。

- ⑤ 对学术和文化发展以及对本校发展做出贡献者将会被授予名誉博士学位，授予仪式不只限于正规授予日。

第四章 注册、休学、复学、自动退学及开除

第二十二条（注册）① 学生需在每学期规定的时间内缴纳学费并完成注册。

- ② 根据《学校课时费及入学费用有关规定》进行退还学费。

第二十三条（休学和复学）① 学生由于疾病或其它原因，上课天数未达到1/3以上时，须提交休学书并得到研究生院院长的同意时方可休学。

- ② 除服兵役、长期在海外工作以及研究生院院长特许的情况外，休学时间不能连续超过两个学期。

③ 需要延长休学时间的学生需提交休学时间延长申请书并获得研究生院院长的同意。

- ④ 休学期满者需在学期初报到期间内，提交复学书并获得研究生院院长的同意方可复学。

第24条（自动退学及开除）① 想自动退学的学生需提交自动退学书并获得研究生院院长的许可。

- ② 出现如下行为中的任何一项者，学生将会被开除。

1. 学期规定日期内未完成注册。
2. 休学期满后复学规定的时间内未复学。
3. 在学年限超过规定期限。

第五章 公开讲座、研究生(与前面的学生概念不同)

第25条（公开讲座）① 研究生院可根据需要开设公开讲座。

- ② 公开讲座旨在为想在职务、教养或是研究上学习专门知识或技术的人员提供指导。

③ 公开讲座的课程、题目、时间、听课人数，地点及其它具体事项由研究生院院长决定。

第26条(研究生) ① 申请研究生院开设的特殊课程或课题时，需得到研究生院院长的许

可。

- ② 研究生须通过本研究生院实施的考试或者招生审核，且被认为其拥有大学毕业程度的水平。
- ③ 研究生的研究课程成绩良好者将授予研究实绩证明书。（附图 表格3）
- ④ 研究生的研究时间为一年（两个学期）。
- ⑤ 在没有针对研究生制定的特别规定时，研究生需遵守本规定。

第六章 学生的义务及奖学金

第27条（学生的义务） 学生需遵守本规定及其他各项规定，按照指导教授的指导专心学习、研究。

第28条（奖学金、研究费） 对于品行端正、学习成绩优秀的学生将颁发奖学金，或者支付、补助研究经费。

第29条（奖罚）① 根据研究生院委员会的决议对有贡献的在校生给予奖励。

② 根据研究生院委员会的决议对违背研究生本分者，由校长给予处罚。

③ 处罚的种类有：警告、有期停学、无期停学及开除。

第七章 职务制度及研究生院委员会

第30条(职务制度) ① 本研究生院由研究生院院长、教系科长及所需职员构成。

② 研究生院院长在每个系科任命一名主任教授，主任教授与教师需由副教授职称以上者担当。

③ 各主任教授由院长任命，统管系科的事务，各系科的指导教授由主任教授任命，担当该专业领域的课程，研究指导以及其它学习指导。

第31条(研究生院委员会和运营委员会) ① 为审议一般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的运营相关事项，

设置了研究生院委员会，一般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另外可以设置运营委员会，决定运营的具体事项。

② 研究生院委员会是从一般研究生院院长、特殊研究生院院长、教务处长、计划研究处长、教授以及副教授中由校长任命的五名左右的委员构成，一般研究生院院长为委员长。

③ 研究生院委员会审议下列事项：

1. 入学、入系、学位课程结业的认证相关事项
2. 系科专业的设立与废止、招生名额的相关事项
3. 有关公开讲座开设的相关事项
4. 有关学生的奖励、奖学及惩处的相关事项
5. 学位论文审查、学位授予相关事项
6. 与研究生院或者研究生院委员会相关的各项规则、条例等的制定、施行、废止等相关事项
7. 研究生院的其它相关事项

第32条（任期）研究生院院长和研究生院委员的任期为一年，可连任。

第33条（研究生院委员会的召集和议决） ① 委员长可以根据需要召开研究生院委员会。

② 研究生院委员会无特别规定下，过半委员出席会议并且出席委员中2/3以上赞成时可进行表决，委员长也具有表决权。

第34条（适用）处理本规定未涉及的事项时，需遵循本校校规。

第35条（施行细则）本规定施行过程中，遇到必要事项时需经委员会审议后由校长决定。

第36条（校规修订）修改本规定时，需提前七天公布其更改内容及原因，后经研究生院委员会和大学评议会审议通过后方产生效力。

附则（第3号）

1.（施行日期）本规定自2012年3月1日起开始实施。

2.（过度条款） 2011年度以前就读产业研究生院硕士课程者，将继续适用以前之规定。但

取得学位所需学分为24学分。

附则（第349号）

- 1.（实行日期）本规定自公布之日起开始实施。

附则（第384号）

1. 本规定自2014年3月1日期开始实施。

附则（第409号）

1. 本规定自公布之日起开始实施。

附则（第426号）

1. 本规定自公布之日起开始实施。

附则（第426号）

1. 本规定自公布之日起开始实施。

附则（第426号）

1. 本规定自公布之日起开始实施。